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67

발의연월일: 2024. 9. 19.

발 의 자:임미애·임오경·이병진

김용민 · 김용만 · 황정아

박지원 · 문대림 · 이기헌

신정훈 · 정준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리면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정부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세제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4).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4제1항 중 "3년 이상 보유"를 "3년 이상 보유(제3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1세대가 취득한 인구감소지역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같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
- ①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일반주택과 인구감소지역주택 외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 레) 제9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 (1) -----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 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 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 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 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 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 보유(제3호의 경우에는 제외한 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 (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 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 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 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1.·2. (생 략) <u><신 설></u>

- ② (생략)
-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나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연접한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 ⑥ (생 략) <신 설>

1. • 2. (현행과 같음)
3.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
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
역주택"이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경우 또는 1세대가 취득
한 인구감소지역주택과 보유하
고 있던 일반주택이 같은 인구
<u> 감소지역에 있는 경우에는</u>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일반
주택과 인구감소지역주택 외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제1
<u>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u>⑦・⑧</u> (생 략)	$\underline{\$} \cdot \underline{\$}$ (현행 제7항 및 제8항
	과 같음)